

보내는 사람

관리번호

■ 신고기간 :

■ 납부기간 :

받는 사람

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문의는



로 하여 주십시오.

모두채움
(납부세액)

년 귀속 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

유형

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청 활용란

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

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신고대상 소득: 사업소득(부동산임대소득 포함) + 근로소득 + 연금소득 + 기타소득

1. 사업소득

-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.

사업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(총수입금액 × 단순경비율)

2. 근로소득

-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.

가.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. 이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.

나.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(사업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)이 있는 경우. 이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.

3. 연금소득

- 국민(공무원·군인·교직원)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.

가.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(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)이 함께 있는 경우. 이 경우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.

나.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간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
4. 기타소득

- 일시적인 강연료·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.

☐ **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**

소득구분	총수입금액, 총급여액 등	소득금액	소득공제	과세표준	총결정세액	기납부세액	납부할 세액
합계							

국세청 활용란

☐ **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**

과세표준	총결정세액	기납부세액	납부할 세액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☐ **소득발생 내역**

소득구분	상호	사업자 등록번호	지급처	총수입금액, 총급여액 등	원천징수세액	업종코드	단순경비율(%)

국세청 활용란

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청 활용란

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방법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스마트폰의 손택스(모바일 앱)에서 신고안내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※ 신고안내 내용을 수정하시는 경우 홈택스·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「신고이동」을 클릭하여 위택스·스마트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.

1. 홈택스: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→ 모두채움 신고(정기신고)
2. 손택스: 손택스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(정기신고)

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납부 방법

※ 아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.

수정한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.

[종합소득세 납부방법]

1. 홈택스: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세금납부 → 국세납부 →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 선택
2. 손택스: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세금납부 → 국세납부 →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 선택

[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]

1. 위택스: 납부하기 → 지방세 → 로그인
2. 스마트 위택스: 메뉴 → 납부하기 → 지방세·세외수입 → 로그인